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화 학 물 질 관 리 법 시 행 령  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외영향평가서·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7182호, 2020. 3. 31. 공포, 2021. 4. 1. 시행)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직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 범위도 법률 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로 변경하는 한편,

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·접수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·정비하여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예방·대응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.

4의2.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

· 제출·이행에 필요한 조치

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”를 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”로 한다. 제22조제1항제2호의5부터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7부터 제2호의9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5 및 제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3조”를 “제23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”를 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의2 중 “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”을 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5.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에 대한 접수

2의6.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  
개여부 심의

3의3.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
에 관한 운영·관리 등

3의4.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화학사고 대  
응 관련 자료제공 등

제22조제1항제6호, 제6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  
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
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2호 자목 및 차목을 각  
각 삭제한다.

다.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 
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 
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  
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 
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 
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 
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부 칙

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,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유해화학물질관리자) ① ·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1. ~ 4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5. ~ 8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9. <u>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 계획서의 작성 · 제출에 필요한 조치</u>                       10. · 11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④ (생 략)</p> <p>제13조(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) 법 제3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2. (생 략)</p>	<p>제12조(유해화학물질관리자) ① ·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                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<u>4의2.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· 제출 · 이행에 필요한 조치</u>                       5. ~ 8. 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10. · 1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                     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2. <u>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</u></p>

3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 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

4. (생략)

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2의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2의5. ~ 2의7. (생략)

3.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

3의2.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장

당자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2의4. (현행과 같음)

2의5.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에 대한 접수

2의6.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여부 심의

2의7. ~ 2의9. (현행 제2호의5부터 제2호의7까지와 같음)

3. --제23조제1항--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-----  
-----

3의2. ----- 화학



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 
의 지정

3의3. 법 제23조의4에 따른 장  
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 
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  
령

<신 설>

4. 5. (생략)

6.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  
계획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 
통보 등

6의2.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  
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 
점검 및 조치 명령

7. 8. (생략)

8의2. 법 제51조제1호에 따른  
청문

9. 10. (생략)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  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 
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  
장(이하 “지방환경관서의 장”이  
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

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 
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

3의3.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  
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  
사회 고지에 관한 운영·관리  
등

3의4.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  
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 
화학사고 대응 관련 자료의  
제공 등

4. 5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7. 8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9. 10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14. (생략)

<신설>

15. ~ 25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4의2.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  
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  
선명령

15. ~ 25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화학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40